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제도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1. 본 규칙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25조 1항에 의하여,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이하 지도전문의) 제도는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는 심장, 복부, 근골격, 갑상선 4개 분야에 대해 내과전문의로서 전공의를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전공의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이며, 진료와는 무관한 자격이다.

제 3 조 (지도전문의 인정기준)

1. 대한내과학회와 인증을 받은 분야별 전문학회가 공동으로 자격을 인정한다.
2. 분야별 인증학회의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정기준은 대한내과학회 최소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회원가입 등 인증학회의 별도자격으로 지도전문의 인정이 어려울 경우 최소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대한내과학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1) 대한내과학회 최소 인정기준
 (1) 임상경험 및 교육경력
 최근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초음파교육(직접 검사를 시행하면서 전공의에게 초음파를 교육하거나 전공의가 시행하는 검사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 모두 포함) 경험이 있고, 실제 초음파 검사를 연평균 40건 이상 (교육 포함)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2) 교육평점 이수기준
 각 인증학회에서 평점 인정 대상 교육 및 연수강좌를 결정하며, 8평점 이상의 교육 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3) 학술활동 기준
 각 초음파교육 인증학회에서 주관/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연자 또는 좌장 경험이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최소 1편 이상 초음파 또는 해당 분과 분야 관련 논문(원저 또는 종설)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거나 저서를 출판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한다.
 (4) 기타
 - 상기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인증학회별로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각 인정학회별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증 및 갱신 시 심의 내용을 내과학회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2) 각 분야별 지도전문의 인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 4 조 (지도전문의 인정 절차)

1. 분야별 인증학회는 매년 6~7월 중 지도전문의 인증을 1회 시행한다.
2. 지도전문의 인증 시행 후 매년 8월 말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대한내과학회에 인증명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도전문의 인정 유효기간)

1. 지도전문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 6 조 (지도전문의 교육 프로그램 및 평점 인정)

1.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교육 프로그램
 1)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도전문의 교육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초음파와 무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교육평점을 인정하는 초음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최소 회당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시간당 1평점, 1일 최대 6평점을 인정한다. 강의 수강시간에 따라 부분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Hands on program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인정되지 않으며,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된 hands on program은 지도전문의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4) 내과전공의 초음파 지도전문의 교육평점을 인정하는 프로그램과 전공의 대상의 초음파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5) 온라인 지도전문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수 인증을 위해 반드시 강의와 문제 출제로 구성하고 답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는 지도전문의 교육 1시간당 최소 3문제 이상 출제하고, 온라인 강의 직후 바로 문제를 풀어서 답안을 제출하며, 총 60점 이상인 경우 평점 이수를 인정한다.
2.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승인
 1) 지도전문의 교육 프로그램 및 평점은 내과학회와 분야별 인증학회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2)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교육 프로그램 평점을 부여받고자 하는 인증학회의 책임자는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1호 (연수교육 세부계획서)를 교육 실시 20일 전에 제출하고, 본 학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교육의 평점승인은 대한내과학회 기타 운영세칙 연수교육 규정 및 지침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정한다.
 3) 승인된 교육 계획을 변경할 때는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한 전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승인된 교육 계획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5) 온라인 지도전문의 교육은 한시적으로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까지 인정하되, 예측 불가한 심각 상황 (예: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학회가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을 인정할 수 있다.
 6) 인증학회는 교육 실시 후 반드시 4주(28일) 이내에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경과규정)

1.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의 교육 평점 인정을 위한 경과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2018년에 최초로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를 인증하는 학회의 경우 기존에 내과전공의 초음파 지도전문의 인증을 위한 필요한 교육 평점을 획득할 기회가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하여, 2018년에 내과전공의 초음파 지도전문의를 최초로 선정할 때는 각 인증학회에서 기존의 임상, 학술, 연수 평점 이수 경력을 고려하여 교육평점 취득자로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의 선정 시 교육평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2019년부터는 교육평점을 각 인증학회별 규정에 따라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 8 조 (대한내과학회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인증학회)

1. 심장: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국초음파학회
2. 복부: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국초음파학회
3. 갑상선: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국초음파학회
4. 근골격: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국초음파학회

5. 추가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인증학회는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 (인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 9 조 (인정증 교부 및 인정회비)

지도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각 인증학회에서는 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0 조 (운영 세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TF의 결정에 따른다.

제 11 조 (부칙)

1. 본 규칙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칙은 2020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칙은 2020년 8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칙은 2021년 6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칙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